

○ **환경부령제911호(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)**

관보 제19971호(2021. 04. 01.) 에 게재된 환경부령제911호(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)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.

2021년 04월 05일

환경부장관

관보내용	정정사항	비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3조(장외영향평가서·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 및 제46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제19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제29조제1항제1호라목, 제47조의2 및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3조(장외영향평가서·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 및 제46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제19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제29조제1항제1호라목, 제47조의2 및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.</p>	<p>관보 제19971호(2021. 4. 1.) 인용조항 정정</p>